

2024년 KYWA 인권영향평가 결과

2024. 12.



목 차

1. 인권영향평가 개요	1
2. 추진절차	2
3.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	2
◦ 평가결과	2
◦ 평가의견	[붙임 1] 참조
4. 향후 추진계획	3
[붙임1] 평가위원 평가내용	4
[붙임2] 인권영향평가 점검표	9

1. 인권영향평가 개요

- (목적)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인권리스크 파악·평가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최소화로 사람존중의 인권경영 정착
- (수행기간) '24. 12월
- (평가대상) '23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
- (평가항목) 9개 분야, 115개 지표
 - * 인권경영체계, 고용, 노동권, 산업안전, 공급망, 지역주민 등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
- (평가방법)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4인이 분야별 평가 및 심층 진단
- (위원회별 담당 평가분야)

구분	평가분야	항목수	지표수	평가위원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5	26	A위원 / B위원
2	고용 및 업무상의 비차별	2	8	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3	12	
4	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	3	13	
5	산업안전 보장	4	16	C위원 / D위원
6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3	10	
7	환경권 보장	4	15	
8	국민(고객) 인권보호	3	8	
9	근로자 인권보호	2	7	
합 계		29	115	

2. 추진절차

계획수립 및 지표개선	이행실적 취합	인권영향평가	결과통보·이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평가 계획 수립• 지표 검토·개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의견수렴 및 인권위 검토• 지표별 담당자 교육 <p>~11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평가지표별 소관 부서의 이행실적 취합 <p>~11월 29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평가자료 작성 및 검토•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<p>~12월 16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평가 결과분석• 평가 결과 최종 보고 및 공개 <p>※ '25년 알리오 공시</p> <p>~12월 31일</p>

3.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

○ 평가결과

(단위: 점)

분야	'22년	'23년 결과	'24년 결과	증감
기관운영 분야	99.34	99.13	99.78	+0.65

- 세부내용

(단위: 점)

구 분	점수 2023년(B)	점수 2024년(B)	전년대비 증감 (B-A)
종합결과	99.13	99.78	+0.65
1.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	100.00	100.00	0
2. 업무 및 고용상의 비차별	100.00	100.00	0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00.00	100.00	0
4.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	100.00	100.00	0
5. 산업안전 보장	97.91	100.00	+2.09
6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100.00	95.00	-5.00
7. 환경권 보장	100.00	100.00	0
8. 국민(고객) 인권 보호	97.91	100.00	+2.09
9. 근로자 인권 보호	97.62	100.00	+2.38

<평가방법>

-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: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(예 1점, 보완필요 0.5점, 아니요/정보없음 0점)
 - 분야별 점수: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
 - 100점 단위 환산방법 = $\Sigma(\text{해당항목 지표점수}) / (\text{해당항목 지표수}) \times 100$
 - 해당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

※ 분야별 지표 개수의 차이로 인해 평균값과 결과 값이 상이할 수 있음.

○ 평가의견: [붙임1] 참조

4. 향후 추진계획

- 소관부서에 평가결과 통보 및 구체적 개선 계획 마련
-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결과 공시
- '25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평가의견 반영

불임1

평가위원 평가내용

평가분야	평가자	평가내용
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A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평가요약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인권경영을 위한 기초적인 체계들을 잘 갖추고 있음.◦ 개선의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1-4-5에서 시간적 추이변화를 한 눈에 보기 위해서 년계획서에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.
	B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평가요약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전반적으로 진흥원내 인권경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· 모-자회사 간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, 인권경영추진단 신설, 인권 침해 모의신고 도입, 구제절차의 내외부 신고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크게 돋보임.· 특히 인권정책선언문 및 내부 규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 하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 chatGPT 등을 활용했는데, 이러한 시도가 진흥원내 인권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매우 유의미한 사례로 보여짐.◦ 개선의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자회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인권신장 교육을 실시한 것이 시의성 ·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. 다만 오프라인 집체교육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교육 영상만을 시청하게 하기보다는, 직접 교육 강사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함.
② 고용 및 업무상의 비차별	A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평가요약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고용 및 업무상의 비차별에 관한 체계를 잘 갖추고 있음.◦ 개선의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-1-1, 2-1-2의 증빙서류에서 취업규정에 있는 각 조항에는 성별, 종교 (신앙), 장애, 나이(연령)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 등의 내용을 빠지지 않고 다 포함해야 함. 현재, 취업규정 조항에는 누락된 내용들이 있음.· 2-2-2에서 비정규직 노동 부분에 대한 내용은 증빙서류에 없음. 포함되어야 함.

	B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용 및 임금, 복리후생, 업무배치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. 또한 비정규직과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도 엄격히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.
③ 결사 및 단체교섭 의 자유 보장	A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○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 부분은 규정보다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행계획에 더 필요한 영역으로 보임.
	B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노조의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,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 및 이행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④ 강제 및 아동 노동의 금지	A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체계를 잘 갖추고 있음. ○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-1-7의 증빙에서 원하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. · 4-1-8의 증빙에는 지표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. 합리적 수준의 통지에 대한 것은 일자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통보로 표현되어야 함. · 4-3-1의 지표내용은 브라인드 채용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임. 합격 후 연령 및 기타 자격과 경력 등 확인,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발견되면 채용취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	B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무시간 준수 및 원칙적 초과근무 금지,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. ○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방지는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명시된 감사권으로 가능하나, 해당 규정이 협력회사에도 적용 가능한지는 모호하므로 예방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(5) 산업안전 보장	C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를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.
	D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고,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등 작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활동 및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 · 또한 임산부와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법상 의무사항 이행 및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, 각종 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 ◦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코로나19는 이제 전염병이 아니므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재강조 및 대책 활동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, 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.
(6)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C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,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각 항목 모두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. ◦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계획은 마련되어 있음. · 다만 위 운영계획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 역시 근거자료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.
	D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흥원은 공급업자, 하청업자,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위해 계약서류 등에 이를 반영하고 있고,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자회사 등 소속 근로자의 인권보호, 고용안정, 노동환경 등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 · 또한 진흥원은 자회사 포함 임직원 대상 인권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,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권경영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.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회사 임직원 포함 인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인권보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,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이행확인서에 자회사 대표이사 날인 보완이 필요하며, 일 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기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.
⑦ 환경권 보장	C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.
	D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흥원은 환경영경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고 있으며, 환경정보의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환경영경체계 구축 활동 및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 · 또한 환경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, 정기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계획 마련 및 상황전파체계를 잘 구축한 것으로 판단됨. ◦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흥원은 비상사태 시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전파할 필요가 있음.
⑧ 국민(고객) 인권보호	C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흥원의 고객과 지역주민 등 국민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개, 개인정보 보호,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음.
	D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흥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됨.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시설정보를 공개하고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, 특허권, 저작권, 지적재산 등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각종 규칙 및 지침을 제정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됨.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시설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기 위해 알리오에 국립청소년시설 개방 정보 안내 등을 하고 있으나, 지역사회 주민들이 알리오 내 시설공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진흥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거나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음.
	C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. ○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한 사항들은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한바 향후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⑨ 근로자 인권보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요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흥원은 임직원의 인권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직장 내 성희롱, 성 폭력, 괴롭힘 금지 및 조치 등을 내규(취업규정 등) 및 매뉴얼화여 근로자 보호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됨. ·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,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및 유연근무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.
	D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및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 교육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를 전파하여 임직원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. · 또한 임신·출산 관련 육아직원 외에도 육아 외에 직원과 관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잡힌 일·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직원과 비육아 직원이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·가정양립 지원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불임2

인권영향평가 점검표

○ 총괄표

구분	항목	체크리스트(개)
기관운영	1.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26
	2. 고용 및 업무상의 비차별	8
	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2
	4. 강제 및 아동 노동의 금지	13
	5. 산업안전 보장	16
	6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10
	7. 환경권 보장	15
	8. 국민(고객) 인권보호	8
	9. 근로자 인권보호	7
	합 계	115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인권 존중 정책 선언	1	진흥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기관의 기관장 수준에서 공표했다.
	2	진흥원의 인권정책선언은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.
	3	진흥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진흥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.
	4	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.
인권 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	1	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.
	2	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기관 내·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.
	3	기관 활동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.
	4	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.
	5	진흥원은 기관운영 및 사업에 관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.
인권 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	1	진흥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.
	2	진흥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.
	3	진흥원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.
	4	진흥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	5	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, 진흥원 차원에서 대응한다.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인권 경영 성과	1	진흥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.
	2	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·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.
	3	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·공개적으로 보고한다.
	4	보고는 진흥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.
	5	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.
	6	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.
구제 절차 마련	1	진흥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.
	2	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.
	3	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.
	4	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.
	5	피해자가 내부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.
	6	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,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.

2

고용 및 업무상의 비차별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고용 및 업무상 비차별	1	진흥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	2	진흥원은 노동자 모집·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.
	3	진흥원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전보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	4	진흥원은 노동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모든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	5	진흥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.
	6	진흥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고용상 남녀 비차별	1	진흥원은 여성노동자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지 않는다.
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	1	진흥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3

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결사·단체교 섭의 자유	1	진흥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.
	2	진흥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	3	진흥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.
	4	진흥원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	1	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	2	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.
	3	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.
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	1	진흥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.
	2	진흥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
	3	진흥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.
	4	진흥원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.
	5	진흥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
4

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강제노동 금지	1	진흥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.
	2	진흥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,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
	3	진흥원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·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.
	4	진흥원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.
	5	진흥원은 주52시간제 근무를 준수한다.
	6	진흥원은 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시간외 근무 발생 시 이에 대해 보상한다.
	7	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.
	8	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.
자회사 ·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	1	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,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.
	2	인신매매,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,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.
연소자 고용 금지	1	진흥원은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
	2	진흥원은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.
	3	진흥원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,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.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작업장 안전	1	진흥원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.
	2	기관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,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.
	3	기관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, 조명, 음용수, 세면대, 의자, 작업복, 음식 보관시설, 숙소,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.
	4	진흥원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.
	5	진흥원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.
	6	코로나 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.
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	1	임산부,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.
	2	진흥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, 18세 미만자를 도덕상.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.
	3	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,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	4	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.
필수 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	1	진흥원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 안전 및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	2	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,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,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.
	3	진흥원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.
	4	진흥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.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.
산업 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	1	진흥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, 지체없이 지급한다.
	2	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, 운영한다.

6

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협력 회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	1	진흥원은 공급업자, 하청업자,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.
	2	진흥원은 자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.
	3	진흥원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.
	4	진흥원은 자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.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.
모니터링 실시	1	진흥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, 하청업자,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.
	2	진흥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.
보안 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	1	진흥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.
	2	진흥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.
	3	진흥원이 시설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,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.
	4	진흥원이 시설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,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.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환경 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	1	진흥원은 환경영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.
	2	진흥원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.
	3	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.
	4	진흥원은 기관 활동뿐만 아니라,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.
	5	진흥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.
환경 정보의 공개	1	진흥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국민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.
	2	환경정책을 개발할 때, 노동자, 고객, 공급자,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.
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	1	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.
	2	사업 수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,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	3	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.
비상 계획 수립	1	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.
	2	진흥원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	3	진흥원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,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.
	4	진흥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, 관련당국,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.
	5	진흥원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.

8

국민(고객) 인권보호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고객 사생활 보호	1	진흥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회사가 수집,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	2	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, 공개되어 있다.
	3	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,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지역주민 인권의 존중·보호	1	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시설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한다.
	2	진흥원은 지역주민의 인권 존중·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.
지적 재산권 보호	1	진흥원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.
	2	진흥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.
	3	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

9

근로자 인권보호

항목	번호	'24년 세부평가 지표
인권 역량 강화	1	임직원의 인권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.
	2	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의식조사를 실시한다.
근로자 보호	1	진흥원은 근로자를 성희롱·성폭력로부터 보호한다.
	2	진흥원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한다.
	3	진흥원은 근로자를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한다.
	4	진흥원은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및 휴직 등 제도를 제공한다.
	5	진흥원은 근로자에게 시간선택제,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제공한다.